



-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-

# 제 안 설 명 서

2021. 12.



배 지 훈 의원

-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-

## 제 안 설 명 서

제안자: 배지훈 의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### □ 먼저,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이 규칙안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 예정인 「지방자치법」에 근거하여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이 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, 「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」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, 지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.

### □ 다음은 규칙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안 제2조에서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를 규정하였고,
-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및 지급 신청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,
-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및 지급 심사기준에 관해 규정하였고,
- 안 제7조 및 제8조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
-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및 근속 연수 계산에 관해 규정했으며,
- 안 제11조에서는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 수립시행에 관해 규정하였고,
- 안 제12조에서 제15조까지는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, 심사대상, 심사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.

본 규칙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

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2021년 11월 25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달서구  
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, 제출된 의견은  
없었습니다.

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

본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 
모두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#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

(배지훈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00821224
----------	----------

발의일자: 2021. 11. 25.

발의자: 배지훈, 김화덕, 김태형, 이성순,  
박정환, 이신자, 김귀화, 조복희

## 1. 제정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('22.1.13. 시행)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 
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, 「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」에  
의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 
선정과 심사방법, 그 지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(안 제2조)
- 나.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및 지급 신청(안 제3조~제4조)
- 다.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및 지급 심사기준(안 제5조~제6조)
- 라. 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 (안 제7조~제8조)
- 마.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및 근속연수 계산 (안 제9조~제10조)
- 바.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(안 제11조)
- 사.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, 심사대상, 심사기준 및 지급절차 등(안 제12조~제15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제정규칙안: 붙임 참조
- 나. 관계법령
  - 1) 「지방자치법」 제103조
  - 2)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조
  - 3) 「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」 제13조

##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「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」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,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,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)**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(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으로서 「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」(이하 “수당지급규정”이라 한다)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  
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.

**제3조(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)**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. 다만, 의장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**제4조(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)**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(별지 제1호서식)에 명예퇴직원(별지 제2호서식)을 첨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국장(이하 “사무국장”이라 한다)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.  
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로 종료한다.

**제5조(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)**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.  
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. 이 경우 재직기간, 정

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.

**제6조(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)**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·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, 「공무원연금법」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.

1. 상위계급의 공무원
  2. 「공무원연금법」상 장기근속공무원
  3. 해당계급 장기재직공무원
  4.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
-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.
- ③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**제7조(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)** 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, 지급장소, 신청서류 등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국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**제8조(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)**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,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.

② 유족의 범위,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「공무원연금법」의 규정에 의한다.

**제9조(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)**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.

**제10조(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)**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(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)으로 하되, 정직·휴직·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.

**제11 조(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)** 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·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

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, 지급신청기간,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**제12 조(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)**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(별지 제3호서식)에 조기퇴직원(별지 제4호서식)을 첨부하여 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.

**제13 조(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)**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직(계)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(계)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,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(계)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(계)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.  
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.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.

**제14 조 (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)**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·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(계)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, 동일 직(계)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.

1. 해당 직(계)급의 장기근속공무원
2. 「공무원연금법」 상 장기근속공무원
3.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

**제15 조 (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)** 조기퇴직수당 지급 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**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(제3조 관련)**

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	명예퇴직 예정일
1. 1. ~ 1. 15.	2. 28.
3. 1. ~ 3. 15.	4. 30.
5. 1. ~ 5. 15.	6. 30.
7. 1. ~ 7. 15.	8. 31.
9. 1. ~ 9. 15.	10. 31.
11. 1. ~ 11. 15.	12. 31.

비고: 1. 2월의 말일이 29일인 경우에는 명예퇴직예정일을 2월 29일로 한다.

2. 해당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(별지 제1호서식)와 명예퇴직원(별지 제2호서식)을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내에 의장에게 제출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##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

(앞쪽)

\* [ ]에는 해당하는 곳에 "✓"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「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」 제7조·제8조에 따름
------	-----	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신청인 기재란	① 소속	③ 공무원 구분	[ ] 일반직( )	④ 직급 · 계급 · 직무군 (호봉)	
	② 전(前) 소속 (특수경력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 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신분 단절 없이 임용된 경우만 작성)			⑥ 생년월일	
	⑤ 성명 한글 한자			⑦ 주소 (우편번호: )	
	⑧ 전화번호(지택)	⑨ 근속기간 년 월	⑩ 정년퇴직일		
	⑪ 비위 · 형벌 사항 [ ] 있음 [ ] 없음	[ ] 비위조사 중 [ ] 수사진행 중 [ ] 형사재판 계류 중 [ ]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 결 요구 필요 [ ] 징계처분 요구 중 [ ] 징계의결 요구 중 [ ]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형(刑) 확정(확정일: [ ] 형량: [ ]) [ ]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(선고일: [ ] 선고형: [ ]) [ ] 「형법」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(직무 관련) 형 확정 (확정일: [ ] 형량: [ ]) [ ] 「형법」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(직무 관련) 형의 선고유예 (선고일: [ ] 선고형: [ ])			
	⑫ 정년 구분 [ ] 연령정년 [ ] 계급정년	⑬ 정년 세(년)			
	⑭ 경력직 퇴직 후 특수경력직 퇴직 시 또는 임기제 임용 후 퇴직 시까지 의 경과기간	[ ] 임기제 [ ] 별정직	년 월	확인 인사담당관 (인)	
	⑮ 정년잔여기간 (수당지급대상 기간) (년 개월)	⑯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용			
	⑰ 비위 · 형벌 사항 확인 [ ] 있음 [ ] 없음	[ ] 비위조사 중 [ ] 수사진행 중 [ ] 형사재판 계류 중 [ ]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 결 요구 필요 [ ] 징계처분 요구 중 [ ] 징계의결 요구 중 [ ]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형(刑) 확정(확정일: [ ] 형량: [ ]) [ ]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(선고일: [ ] 선고형: [ ]) [ ] 「형법」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(직무 관련) 형 확정 (확정일: [ ] 형량: [ ]) [ ] 「형법」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(직무 관련) 형의 선고유예 (선고일: [ ] 선고형: [ ])			
	확인 인사담당관 (인)	연금담당관 (인)	감사담당관 (인)		

「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」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  
년 월 일  
신청인  
(서명 또는 인)

- 첨부서류
-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. 다만,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.
  - 명예퇴직원(「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(표준안)」 별지 제2호서식) 1부
  - 경력증명서 1부(「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」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

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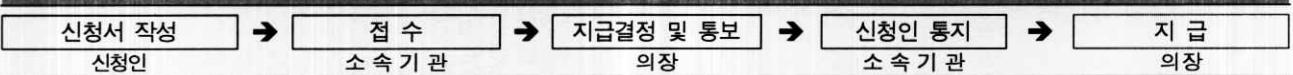
년 월 일  
직인

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국장

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장 귀하

- 비고:
-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,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 · 연금 · 감사담당자가 적습니다.
  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. 다만,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은 2010년 3월 22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.

처리절차



**작성방법**

1. ②란은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을,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전의 소속기관을 적습니다.
2. ③란은 해당란([ ])에 "✓"표시를 하고, 특정직공무원(소방·교육 공무원 등)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종류를 ( )에 적습니다.  
\*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,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일 당시의 공무원 종류를 적습니다.
3. ④란을 적을 때에는,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에서 신분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 또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직전의 직급(계급) · 직무군(전문경력관의 경우) · 호봉을 적습니다.
4. ⑨란은 「공무원연금법」 제23조제1항의 재직기간을 적되, 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.
5. ⑪란은 신청인이 해당란에 "✓"표시를 하고,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 확정일과 형량을 적고,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선고일과 선고형을 적습니다.
6. ⑫ ~ ⑯란은 해당 기관의 인사담당관·연금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이 직접 적습니다(⑭란은 특수경력직 또는 임기제근무기관의 인사담당관이 적습니다).
7. ⑰란은 해당란에 "✓"표시를 합니다.
8. ⑲란은 연령정년 및 계급정년에 따라 해당 정년을 "세" 또는 "년"으로 적습니다.
9. ⑳란은 명예퇴직 예정일의 다음 달 1일부터 정년일까지의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적습니다.
10. ㉑란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직접 파악·확인할 수 있는 소속기관의 해당 공무원이 작성되어("✓" 표시), 직급과 성명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.

## 명예퇴직원

---

1. 소속:

2. 직위:

3. 직급·계급:

4. 성명:

명예퇴직 사유:

※ 명예퇴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, 재취업의 경우 대상기관, 직위, 시기(기간) 등을 명시합니다.

명예퇴직 신청일:

명예퇴직 희망일:

※ 명예퇴직 희망일은 「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」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시 명예퇴직 신청자만 적습니다.

---

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위와 같이 ([ ]정기 · [ ]수시) 명예퇴직하려고 하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장 귀하

---

---

[별지 제3호서식]

## 조기퇴직수당 등 지급신청서

\*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✓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「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」 제11조에 따름
------	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소속	공무원 구 분	[ ]일반직(임기제 제외) [ ]특정직( [ ]별정직)	직급 · 직무군 또는 상당 계급 (호봉)	
성명	(한글) (한자) 주 소 (우편번호: )	생년월일		
전화번호 (주택)		최초 임용일	년 월 일	근속기간
수당 청구액		산출내용		

「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」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국장 귀하

첨부서류	1.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. 다만,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. 2. 조기 퇴직원(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(표준안)」 별지 제4호서식) 1부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확인 인사담당 (인)

위와 같이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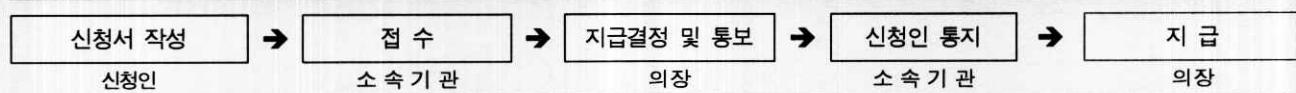
직인

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국장

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장 귀하

비고: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, 굵은 선의 확인란은 인사담당자가 적습니다.

### 처리절차



## 조기퇴직원

---

1. 소속:

2. 직급:

(상당계급)

3. 성명:

---

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려고 하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장 귀하

---

---

## 【관계 법령】

### □ 지방자치법

**제103조(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)**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·감독하고 법령과 조례·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·교육·훈련·복무·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.

### □ 지방공무원법

**제6조(임용권자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[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의 교육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] 및 지방의회의 의장[시·도의회의 의장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회의 의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]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·휴직·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(이하 “임용권”이라 한다)을 가진다.

### □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

**제3조(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)**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「공무원연금법」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의 기간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공무원(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및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)으로 한다. 다만, 이 영이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(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·명예전역수당 등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이를 제외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(교육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 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.

③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
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가.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사람

나.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

다.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

라.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

2.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사람

3.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·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

또는 수사중인 사람

4. 법 제2조 및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에 따른 경력직공무원(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)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중 정무직공무원(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)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

5.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

**제7조(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심사·결정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경과후 30일 이내(제6조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)에 제3조의 재직기간 및 명예퇴직수당지급 제외사유를 확인한 후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. 신청인이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.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1. 상위직공무원

2. 장기근속공무원

**제9조(조기퇴직수당의 지급 및 제외대상)** ①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, 직제와 정원이 개편되거나 폐지된 경우 또는 예산이 감소한 경우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에 그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공무원(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)으로 한다.

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중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**제13조(시행규칙)** 근속연수의 계산,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,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, 그 지급 절차 기타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(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교육규칙)으로 정한다.